

영국해상보험법의 최근 개정동향 및 시사점 - 2015년 영국 Insurance Act를 중심으로 -

전해동* · 신건훈**

-
- I. 서 언
 - II. 영국보험법의 제정 과정
 - III. 영국해상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시사점
 - IV. 결 언
-

주제어 : 영국보험법, 최대선의의무, 고지의무, 보험담보, 사기적 보험금 청구

I. 서 언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¹⁾은 수세기 동안 해상보험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매우 성공한 법률로 여겨져 왔으며 처음의 법률조항을 유지하면서 좀처럼 개정되지도 않았다.²⁾ 특히, 여러 나라에서 각국의 해상보험법률의 기반이 되거나 그 발달 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³⁾ 영국해상보험법은 그동안 해상보험업계에서 사용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조교수(주저자), E-Mail : hjeon@kmou.ac.kr

** 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 gunhoon1@gnu.ac.kr

1) 영어표현은 Marine Insurance Act (MIA) 1906이며, 원명은 “An Act to codify the Law relating to Marine Insurance”이다. 동 법은 1906년 12월 21일 채택되고, 1907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2) 동 법은 Mackenzie Dalzell Chalmers경에 의해 작성되었다. 보다 자세한 배경은, P.M. Eggers,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judicial attitudes and innovation - time for reform?’, in Chapter 10 of D.R. Thomas (ed), *Marine Insurance: The Law in Transition*, London: Informa, 2006, pp. 193~196 참조.

되어 왔던 영국 보통법, 규칙 및 관행을 성문화 한 것이다.⁴⁾ 영국해상보험법에 대한 영국법원의 일반적인 접근방식도 동 법에 수록된 일반적인 법 원칙을 따라온 것이다. 이 법은 오늘날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 법률제도를 따르는 국가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서 계약상 편입 또는 관습에 따라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일부내용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⁵⁾과 그 당시 완벽한 법률로 여겨졌던 정립된 원칙에 대해 이제는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사실 영국해상보험법의 주요 원칙들은 바로 110년 전 당시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에 동 법이 다소 “엄격하고, 관련성이 없고, 불명확하고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다(“rigid, irrelevant, obscure or out of date”)⁶⁾는 견해가 있는 것도 당연할 수 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영국법률위원회와 스코틀랜드법률위원회⁷⁾는 본격적인 영국보험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최근 2015년 영국보험법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여 2016년 8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의 신설로 영국해상보험법 상의 핵심 조항도 영향을 받아 개정될 예정이다. 특히, 동 법의 시행 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⁸⁾ 국내 해상보험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개정동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는 국내 보험업계와 해운업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5년 영국보험법에 따른 영국해상보험법 주요 핵심 조항의 개정동향 및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⁹⁾

3)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ALRC”), Report No. 91, Review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9, paras 7.4-7.14; F.D. Rose, ‘Restating insurance contract law: centennial reflections on landmark reform’, *LMCLQ*, 2006, p. 464.

4) 실제로 영국해상보험법을 보통법의 부분 성문화(partial codification of the common law)라고 묘사되기도 하였다(*Pan Atlantic Insurance Co Ltd v Pine Top Insurance Co Ltd* [1994] 2 Lloyd’s Rep 427, at 432 per Lord Mustill).

5) 예를 들어, 담보위반과 관련하여 중요성 문제라든지, 자동적인 면책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6) A. Diamond, ‘The Law of Marine Insurance - has it a future?’ *LMCLQ*, 1986, p. 26.

7) The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이하 ‘법률위원회’라고 한다).

8)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이다. “영국법 준거약관의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2다59528,59535 판결(김진권·전해동, “해상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해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 2006, p. 112).

9) 현재 해상보험법상 주요 법리별 연구논문은 존재하나, 아직까지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전반적인 개정동향 및 내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자료가 없어서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영국보험법의 제정과정

1. 영국보험법의 제정과정

영국에서 보험법 개정 움직임은 약 60년 전부터 있어왔다. 법률위원회의 전신인 법률개혁위원회(The Law Reform Committee)가 1957년 당시 개정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극히 제한된 개정제안을 하였다.¹⁰⁾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2006년 법률위원회가 공동개혁계획을 시작했을 때이다.¹¹⁾ 법률위원회는 영국해상보험법을 포함한 보험계약법이 공정성과 확실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지금까지 법률위원회는 9개의 Issues Papers, 3개의 Consultation Papers 그리고 2개의 Reports를 발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2개의 중요한 법안이 탄생하게 되었다. 즉,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2012년 영국소비자보험법)과 Insurance Act 2015 (2015년 영국보험법)이 그것이다.

여기서 2015년 영국보험법은 2014년 7월 발간된 법률위원회 보고서인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시 법률위원회는 2014년 7월 15일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으로부터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보험계약법의 공동연구보고서(Joint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law)'¹²⁾와 보험법초안(the Draft Insurance Bill)을 마련하여 재무부(TM Treasury)에 건의하였다. 특히, 동 초안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와 위반 시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같은 해 7월 17일, 재무부는 이해관계자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조항이 삭제된 보험법안(the Insurance Bill, 155)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험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여 2015년 2월 12일 여왕의 재가를 받게 되어 2016년 8월 발효되게 된다.

10) R. Merkin and O. Gurses, "The Insurance Act 2015: Rebalancing the Interests of Insurer and Assured", *MLR* 78(6), 2015, p. 1005.

11) 법률위원회는 법률위원회법(Law Commissions Act, 1965)에 의거하여 설립된 상설기구로서 현행 법률의 검토 및 개정 권고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12)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Law Com No 353/Scot Law Com No 238, 2014.

2. 영국해상보험법의 최근 개정

2015년 영국보험법이 2016년 8월 발효되면 2013년 발효된 소비자보험 개정과 함께 최근 110년간 영국 및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험계약 관련 주된 역할을 해온 보험 법령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예정이다. 특히, 영국보험법의 신설로 말미암아 그동안 해상보험의 근간이 되어 왔던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의 핵심 조항이 개정되게 되었다. 2015년 영국보험법의 신설로 인해 영국해상보험법 상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최대선의의무 및 고지의무, 보험담보,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자 구제, 적용제외규정 등에 관한 것이다.¹³⁾

따라서 이하에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서 그 개정내용 및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Ⅲ. 영국해상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시사점

1. 최대선의 및 고지의무¹⁴⁾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최대선의의무는 1766년 *Carter v. Boehm*¹⁵⁾ 사건에서의 Mansfield경의 판결에 기초로 하고 있으며 당사자에게 고지의무를 지우고 있는 이유는 사기를 방지하고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여 대체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고지의무제도를 선의계약성으로부터 발

13) 최근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The Law Com No.353; Scot Law Com No.238, 2014)의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14)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세민,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영국, 독일 및 유럽보험계약법 준칙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47권, 안암법학회, 2015; 신건훈, “영국 보험계약법 상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주요 개혁동향”,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이윤석, “보험계약상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 한양법학 제21권 제4집, 한양법학회, 2010 등 참조.

15) (1766) 3 Burr 1905. 동 사건에서 “보험은 사행에 기초한 계약이다. 우연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산출하는 데 근거가 되는 특별한 사실들은 거의 대부분 피보험자의 지식으로 편제되어 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표시를 신뢰하며, 피보험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그러한 사실의 묵비는 사기이며, 결국 보험계약은 무효이다”고 판시하였다.

전시켰다.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14¹⁶⁾에서는 영국해상보험법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최대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상대방이 동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시켰다.¹⁷⁾ 이는 영국해상보험법의 최대선의에 대한 정의규정은 유지시킴으로써 최대선의가 보험계약의 이론적인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 (1)항은 “본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일체의 중요한 사항을 계약 성립 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통상의 업무상 당연히 알아야 할 일체의 사항을 아는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가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선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모든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여 피보험자의 능동적 고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18조 (2)항은 “중요한 사실은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와 위험인수의 여부를 판단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다루는 현행 규정인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제20조는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3¹⁸⁾에서 위험의 적절한 표시의무(fair presentation of the risk)

16) Section을 ‘조’, ‘조항’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2015년 영국보험법의 경우 Section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17)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14 (Good faith)

(1) Any rule of law permitting a party to a contract of insurance to avoid the contract on the ground that the utmost good faith has not been observed by the other party is abolished.

18)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3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1) Before a contract of insurance is entered into, the insured must make to the insurer a fair presentation of the risk.

(2) The duty imposed by subsection (1) is referred to in this Act as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3) A fair presentation of the risk is one—

(a) which makes the disclosure required by subsection (4),

(b) which makes that disclosure in a manner which would be reasonably clear and accessible to a prudent insurer, and

(c) in which every material representation as to a matter of fact is substantially correct, and every material representation as to a matter of expectation or belief is made in good faith.

(4) The disclosure required is as follows,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5)—

(a) disclosure of every material circumstance which the insured knows or ought to know, or

(b) failing that, disclosure which gives the insurer sufficient information to put a prudent insurer on notice that it needs to make further enquiries for the purpose of revealing those material circumstances.

(5) In the absence of enquiry, subsection (4) does not require the insured to disclose a circumstance if—

로 대체된다. 적절한 표시라는 표현은 이전에도 종종 사용되어 왔지만,¹⁹⁾ 영국보험법 상 새로운 의무는 기존의 규정보다 의무 및 구제법 측면에서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14가 보험법 상 최대선의원칙으로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제법을 분리시킴으로써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에 상당한 수정을 가했다는 점이다. 2015년 영국보험법 상 고지의무에 대해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적절한 표시의무는 부실표시 및 불고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둘째, 동 법은 개별사항이 아닌 전반적인 의무의 준수를 요구한다. 따라서 완전한 고지를 하지 못하였거나 하나의 부실표시가 포함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 고지위반이 아니게 된다.²⁰⁾ 이것은 모든 고지사항 및 부실표시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의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법원에서도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18-제20조 관련 단지 하나의 불고지 또는 부실표시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2015년 영국보험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의 행동을 개개의 과실이나 부작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전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위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법률위원회는 또한 보험계약자의 정리되지 않은 다량의 자료 제출(data dumping)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사실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에는 중요한 정보와 함께 관련 없는 정보의 고지를 제재하는 어떠한 문구도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정리되지 않은 다량의 자료를 고지함으로써 동 규정을 만족시킬 수도 있었다. 여기서 기존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에서의 중요성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신중한 보험자(prudent insurer)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된다.

셋째, 불고지에 대한 규정이 보다 명확하게 되었다. 적절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신중한 보험자에게 사안에 대한 통지를 하기 위해 충분한 고지를 했다면 충

(a) it diminishes the risk, (b) the insurer knows it, (c) the insurer ought to know it, (d) the insurer is presumed to know it, or (e) it is something as to which the insurer waives information.

(6) Sections 4 to 6 make further provision about the knowledge of the insured and of the insurer, and section 7 contains supplementary provision.

19) 최근 Flaux 판사가 *Synergy Health (UK) Ltd v CGU Insurance Plc* [2010] EWHC 2583 (Comm); [2011] Lloyd's Rep IR 500, [172]에서 인용하였으며, 특히 *CTI v Oceanus* [1984] 1 Lloyd's Rep 476 사건을 논의한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11th edn, (Sweet & Maxwell, London, 2008), [17.083]에서 사용되었다. 이 표현은 *WISE Underwriting Agency Ltd v Grupo Nacional Provincial SA* [2004] EWCA Civ 962; [2004] 2 Lloyd's Rep 483; [2004] Lloyd's Rep IR 764, [63 - 64쪽]의 항소법원에서도 사용되었다.

20) 이 경우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 및 제20조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이 된다.

분하며, 따라서 보험자는 추가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²¹⁾

넷째, 동 법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자가 고지의 목적으로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상당한 세부사항까지 제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인지 관련해서는 Section 4에서 다루고 있으며, 피보험 회사 조직 내에서 주요 직원의 범위를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정도를 확인해주고 있다.²²⁾ Section 5는 보험자의 실제적 및 추정적 인지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즉, 위험 평가과정에 관련된 자로 한정하고, 보험자가 알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불고지 및 부실표시에 대한 구제법²³⁾이 비례적인 대응원칙을 통한 다양한 구제법으로 대체된 점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동 법의 Schedule 1에 수록되어 있다. 고의적이고 무모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처음부터 취소시킬 수 있다. 그 외의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법원은 만약 보험자가 위험의 적절한 표시를 받았다면 무엇을 했었을지에 대해서 고려한다. 만약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보험자가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했을 것이라면 보험료 차액 비율만큼 보험금도 비례보상하게 되며, 이 경우 지급된 보험료와 지급되었을 보험료(높은 보험료)의 비례를 참조하여 계산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되 계약의 다른 조건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었다면 계약은 마치 그 계약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된다.

시사점

2015년 영국보험법은 최대선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의 고지의무를 위험의 적절한 표시의무로 대체하며, 불고지 및 부실표시에 대한 구제법을 비례적인 대응원칙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바꾼 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동 법은 보험계약자의 개개의 과실이나 부작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체적인 의무의 준수를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는 정리되지 않은 다량의 자료 제출에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최대선의 및 고지의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불공정성 및 비형평성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비례적인 대응원칙을 통

21) 2015년 영국보험법, s.3(4)(b).

22) 2015년 영국보험법, s.4(6)는 보험계약자에게 이용가능한 정보의 합리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3)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상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계약을 처음부터 취소시킬 수 있다.

한 다양한 구제법이 보험금 지급에 있어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다. 하지만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18-제20조 상의 엄격한 구제법과는 관계 없이 현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원칙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복잡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현행 보험금 청구 협상에 다른 기준을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에 갈 경우에는 이러한 비례적 감액원칙으로 인해 복잡성이 추가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 법의 새로운 개념, 비례적 감액원칙 등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개념 및 원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응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2. 보험담보²⁴⁾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에서 담보란 확약담보(promissory warranty), 즉 특정한 사항이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것, 또는 특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특정한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피보험자가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 또한 동 조 제3항은 담보는 중요성 여부를 불문하고 정확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담보 위반일로부터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영국보험법은 보험담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진행하였다. *De Hahn v Hartley*²⁶⁾에서의 Mansfield 경의 판결의 산물이며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33조에 성문화된 담보는 계약 위반일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을 자동으로 면하고 있다.²⁷⁾ Section 9-11는 비소비자보험 및 비소비자보험계약의 변경에 모두 적용된다.

24) 보험담보와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찬영, “해상보험에 있어 담보특약 법리의 변화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5; 이정원, “2015년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 효과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제150호, 한국법학원, 2015; 정완용, “해상보험법상 보험자 면책사유와 담보특약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5; 신건훈, “영국 보험계약법 상 담보법원칙의 개혁동향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등 참조.

25)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 “A warranty, in the following sections relating to warranties, means a promissory warranty, that is to say, a warranty by which the assured undertakes that some particular thing shall or shall not be done, or that some condition shall be fulfilled, or whereby he affirms or negatives the existence of a particular state of facts.”

26) (1786) 1 TR 343; 99 ER 1130.

27) *Bank of Nova Scotia v Hellenic Mutual War Risk Association (Bermuda) Ltd (The Good Luck)* [1991] 2 Lloyd’s Rep 191 ; [1992] 1 AC 233; [1991] 2 WLR 1279; [1991] 3 All ER 1.

Section 9(2)²⁸⁾는 비소비자보험의 경우 계약의 기초사항(the basis of the contract) 약관을 금지하고 있다.²⁹⁾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는 청약서 등에서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각종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최종적으로는 계약의 기초사항 약관에 대해 확인 및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³⁰⁾ 이러한 약관은 그 형식이나 내용은 보험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근까지도 보험자들은 계약의 기초적 사항을 보험계약체결에 활용하고 있고, 영국 법원도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³¹⁾ 하지만 이와 같은 보험계약의 기초사항이 사실상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특정사항에 대한 확인이나 진술이 진실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담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대해 Section 9(2)는 계약의 기초사항 약관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Section 10(1)은 담보위반에 대한 자동적인 면책 규정을 폐지하였다. Section 10(2)와 Section 10(4)는 자동적인 면책이 아니라 담보위반 시점과 담보위반이 치유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면책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³²⁾ 즉, 담보위반이 발생되기 이전 또는 담보위반이 치유된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보험금지책임을 면하지 못한다.³³⁾

28)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9 (Warranties and representations)

(2) Such a representation is not capable of being converted into a warranty by means of any provision of the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or of the terms of the variation), or of any other contract (and whether by declaring the representation to form the basis of the contract or otherwise).

29) 소비자 보험계약의 경우 이미 2012년 영국소비자보험법(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의 제정으로 보험계약의 기초사항이 폐지되었다.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Section 6 [Warranties and representations]

(1) This section applies to representations made by a consumer –

(a) in connection with a proposed consumer insurance contract, or
(b) in connection with a proposed variation to a consumer insurance contract.

(2) Such a representation is not capable of being converted into a warranty by means of any provision of the consumer insurance contract (or of the terms of the variation), or of any other contract (and whether by declaring the representation to form the basis of the contract or otherwise).

30)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에 의한 위와 같은 진술이나 특정사항에 대한 확인이 진실이며, 이것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기초적 사항이 됨을 확인합니다(I declare that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s made by me above are true, and I agree that they shall be the basis of the contract between me and the Company).”

31) R.A. Hasson, “The Basis of the Contract Clause in Insurance Law”, *The Modern Law Review* Vol. 34 No. 1, 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1971, p. 29.

32)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10 (Breach of warranty) (2) An insurer has no liability under a contract of insurance in respect of any loss occurring, or attributable to something happening, after a warranty (express or implied) in the contract has been breached but before the breach has been remedied.

Section 10(5)은 언제 담보위반이 치유가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부분이 향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³⁴⁾ 즉, 담보위반은 문제의 담보가 특정한 시한까지 어떤 일이 행해지거나 (또는 행해지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또는 어떤 사항이 사실이거나 (또는 사실이 아니거나) 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³⁵⁾ 추후 담보와 관련된 위험이 계약당사자들이 원래 고려하였던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 담보위반이 치유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담보위반을 종료한 때에 담보위반이 치유된 것으로 본다.³⁶⁾

Section 11은 담보위반과 보험손해 사이에 제한적으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Section 11(1)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정의하는 조건을 제외하고³⁷⁾ 특정 유형의 손해, 특정 장소에서의 손해, 특정 시간에서의 손해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진 보험계약상의 조건에 적용한다. Section 11(2)는 만약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피보험자가 해당 계약조건의 미준수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보험자는 그 손해와 관련된 보험계약 하에서 보험자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⁸⁾³⁹⁾

33)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10 (Breach of warranty)

(4) Subsection (2) does not affect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in respect of losses occurring, or attributable to something happening –

(a) before the breach of warranty, or

(b) if the breach can be remedied, after it has been remedied.

34) J. Davey, “English Marine Insurance and General Average Law”, *International Maritime and Commercial Law Yearbook*, 2015, p. 93.

35)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10 (Breach of warranty) (6) A case falls within this subsection if –

(a) the warranty in question requires that by an ascertainable time something is to be done (or not done), or a condition is to be fulfilled, or something is (or is not) to be the case, and

(b) that requirement is not complied with.

36)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10 (Breach of warranty) (5)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breach of warranty is to be taken as remedied –

(a) in a case falling within subsection (6), if the risk to which the warranty relates later becomes essentially the same as that originally contemplated by the parties,

(b) in any other case, if the insured ceases to be in breach of the warranty.

37) 어떤 담보특약의 경우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조건으로서 보험자에게 중요한 특약이기에 그 위반과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the Business Insured’s Duty of Disclosure and the Law of Warranties*, (LCCP No.204; ScLCDP No.155; 2012), at 17.

38)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11 (Terms not relevant to the actual loss)

(2) If a loss occurs, and the term has not been complied with, the insurer may not rely on the

시사점

영국해상보험법 상 보험담보는 2015년 영국보험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중 하나이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되어 왔던 보험담보 위반을 치유할 수 없었던 원칙은 이번에 폐지되었다. 따라서 담보위반 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위반 일로부터 장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면제된다는 기존 법리는 폐지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위반일로부터 치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러한 변화의 대전제는 보험소비자의 보호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Section 10(5)에서 다루고 있는 담보위반의 치유시기에 대한 문제는 향후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론적 고찰을 통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3. 사기적인 보험금청구⁴⁰⁾

영국법에서는 보험에서 사기의 유형을 5가지로 인식하고 있다. (1) 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⁴¹⁾ (2)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의적 또는 무모한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 혹은 보험금청구 금액이 과장된 경우,⁴²⁾ (3) 청구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었으나 피보험자가 추후 과장되었음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청구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4) 진정한 손해가 발생되었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사실을 사기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 과장하고자 한 경우,⁴³⁾ 그리고 (5) 피보험자가 명시적 면책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등의 경우가 있다.⁴⁴⁾

non-compliance to exclude, limit or discharge its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for the loss if the insured satisfies subsection (3).

(3) The insured satisfies this subsection if it shows that the non-compliance with the term could not have increased the risk of the loss which actually occurred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occurred.

39) 예를 들어, 보험계약에 도난방지시스템 설치가 기재되어 있고 동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1층에 홍수피해가 있을 경우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있으며, 반면 보험계약에 도난 방지시스템 설치가 기재되어 있고 동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내부근로자가 물건을 훔친 경우로서 도난방지시스템으로 동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0)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건훈, “영국 보험법의 개혁동향에 관한 연구-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6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등 참조.

41) *Samuel v Dumas* [1924] AC 431.

42) *Agapitos v Agnew (The Aegeon)* (No 1) [2002] Lloyd’s Rep IR 573 at 30.

43) *Ibid*, at 30.

44) 예를 들어, 유효한 보험금청구를 위한 거짓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Ibid* at 18; *The Captain*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결과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보험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다는 관점을 들어 이전의 판례는 적절한 구제법은 처음부터(*ab initio*) 계약을 해제한다는 입장이었지만,⁴⁵⁾ 이는 *Manifest Shipping Co Ltd v Uni-Polaris Insurance Co Ltd (The Star Sea)*⁴⁶⁾ 사건 및 *Axa Insurance Ltd v Gottlieb*⁴⁷⁾ 사건을 통해 보험자 면책은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Section 12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법만 다루고 있다. 2015년 영국 보험법은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기에 보험사기의 정의 및 구성요건 등에 관한 부분은 법원의 역할로 남겨 두고 있다.

Section 12(1)은 보험계약 하에서 피보험자가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a)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b) 보험자는 해당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고, (c) 보험자는 통지를 통해 사기적인 행위(*fraudulent act*) 시점부터 유효하도록 보험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⁴⁸⁾ 여기서 사기적인 행위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며,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사기적인 행위의 정확한 발생시점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법률위원회는 법원이 새로운 개념의 도입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문제의 판단은 법원의 해석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다.⁴⁹⁾

Section 12(1)(c)에서 나타나듯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해당 계약의 종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계약종료권은 자동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선택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효과적으로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자는 사기적인 행위 이후에 발생한 진정한 손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상 보험금 지급의

Panagos D.P. [1986] 2 Lloyd's Rep. 470.

45) *Black King Shipping Corp v Massie (The Litsion Pride)* [1985] 1 Lloyd's Rep 437.

46) [2001] 1 Lloyd's Rep 389.

47) [2005] Lloyd's Rep IR 369.

48)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12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1) If the insured makes a fraudulent claim under a contract of insurance –

(a) the insurer is not liable to pay the claim,

(b) the insurer may recover from the insured any sums paid by the insurer to the insured in respect of the claim, and

(c) in addition, the insurer may by notice to the insured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with effect from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49)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The Law Com No.353; Scot Law Com No.238, 2014), paras. 23.33~23.35.

무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보험자가 계약종료권을 선택할 경우 보험자는 사기적인 행위 이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⁵⁰⁾ 아울러 보험자의 계약종료권은 사기적인 행위 이전에 발생한 진정한 손해와 관련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⁵¹⁾ 따라서 사기적인 행위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기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한 청구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시사점

2015년 영국보험법은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법만을 다루고 있으며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기에 보험사기의 정의 및 구성요건 등에 관한 부분은 법원의 역할로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결과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지만, 동 법을 통해 보험자의 계약종료권은 사기적인 행위 이전에 발생한 진정한 손해와 관련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해 주었다.

4. 적용제외(Contracting out) 규정

계약 당사자 간에는 계약사항에 대해 상호합의를 통해 적용제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영국보험법은 Section 15-18에 걸쳐 이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소비자보험계약에서 동 법 Part 3, 4에서 정한 조건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⁵²⁾ 비소비자보험계약에서

50)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12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2) If the insurer does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a) it may refuse all liability to the insured under the contract in respect of a relevant event occurring after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and

(b) it need not return any of the premiums paid under the contract.

51)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12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3) Treating a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under this section does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with respect to a relevant event occurring before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52)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15 (Contracting out: consumer insurance contracts).

(1) A term of a consumer insurance contract, or of any other contract, which would put the consumer in a worse position as respects any of the matters provided for in Part 3 or 4 of this Act than the consumer would be in by virtue of the provisions of those Parts (so far as relating to consumer insurance contracts) is to that extent of no effect.

계약의 기초사항에 대해서 동 법 Section 9에서 정한 조건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그 부분도 효력이 없다.⁵³⁾ 그리고 이 규정은 소비자보험계약과 비소비자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⁵⁴⁾

하지만 비소비자보험계약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적용제외 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Section 16(2)는 비소비자보험계약에서 동 법의 Part 2, 3, 4에서 정한 조건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Section 17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적용제외(contracting out)가 가능하며, Section 17에서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특별한 투명성 요건(transparency requirements)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불이익 조항(the disadvantageous term)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⁵⁵⁾ 불이익 조항은 그 효과를 규정함에 있어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Section 17(3)]. 따라서, 이 경우 계약서 작성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지하고 투명성 요건이 충족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불이익 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주위환기의무와 유효성 요건 충족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피보험자 부류의 성격, 보험계약 체결 시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Section 17(4)]. 또한 만약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이 보험계약 체결당시 또는 계약의 변경 시에 불이익 조항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주위환기의무 위반에 항변을 하지 못한다[Section 17(5)].

(2) In subsection (1) references to a contract include a variation.

(3) This section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contract for the settlement of a claim arising under a consumer insurance contract.

53)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16(1) (Contracting out: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1) A term of a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or of any other contract, which would put the insured in a worse position as respects representations to which section 9 applies than the insured would be in by virtue of that section is to that extent of no effect.

54)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15(3) & 16(4).

55) 2015년 영국보험법, Section 17 (The transparency requirements)

(1) In this section, “the disadvantageous term” means such a term as is mentioned in section 16(2).

(2) The insurer must take sufficient steps to draw the disadvantageous term to the insured’s attention before the contract is entered into or the variation agreed.

(3) The disadvantageous term must be clear and unambiguous as to its effect.

(4) In determining whether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s (2) and (3) have been met, the characteristics of insured persons of the kind in question,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5) The insured may not rely on any failure on the part of the insurer to meet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2) if the insured (or its agent) had actual knowledge of the disadvantageous term when the contract was entered into or the variation agreed.

시사점

2015년 영국보험법은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사항에 대해 상호합의를 통해 적용 제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원칙상으로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나, 비소비자보험계약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적용 제외 규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자는 이러한 예외규정 상 조건에 대해서 주지하고 투명성 요건이 충족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즉, 불이익 조항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키고 유효성 요건 충족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피보험자 부류의 성격, 보험계약 체결 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5. 보험금 지급지체(Late payment)⁵⁶⁾

2015년 영국보험법이 제정되기 바로 전 법률위원회의 보고서⁵⁷⁾에서는 보험금 지급지체에 대해서 다루었으나 최종 2015년 영국보험법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험금 지급지체 관련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법원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지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지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단지 지체기간에 대한 이자와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Sprung v Royal Insurance(UK) Ltd*⁵⁸⁾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지체로 파산에 이르게 되자,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과 지연이자 외에 보험금의 지급지체로 발생한 추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은 피보험자의 청구를 허용하였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결정을 뒤집고 보험자에게 면책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지체는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도산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2004년 6월 법률위원회는 모든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합리적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묵시적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보험법초안을 마련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러나 영국재무부는 이해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조항이 삭제된 보험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지금의 2015년 영국보험법이 된 것이다.

56)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원정, “영국법상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5 등 참조.

57)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The Law Com No.353; Scot Law Com No.238, 2014).

58) [1999] 1 Lloyd’s Rep. IR 111.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2015년 영국보험법에서는 보험금 지급지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으나, 입법 전까지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향후 보험 관련 이해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다시 재논의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

IV. 결 언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은 수세기 동안 해상보험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매우 성공한 법률로 여겨져 왔으며 처음의 법률조항을 유지하면서 좀처럼 개정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동 법의 일부내용에 대해 개정요구 및 비판이 있어 왔고, 이에 2006년부터 법률위원회는 본격적인 영국보험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지금의 2015년 영국보험법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2015년 영국보험법의 신설로 인해 영국 해상보험법 상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최대선의의무 및 고지의무, 보험담보,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자 구제, 적용제외규정 등에 관한 것이다. 고지의무는 위험의 적절한 표시의무로 대체되었으며, 불고지 및 부실표시에 대한 구제법이 비례적인 대응원칙을 통한 다양한 구제법으로 대체된다. 보험담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정이 진행되었다. 담보위반에 대한 자동적인 면책 규정이 폐지되고, 자동적인 면책이 아니라 담보위반 시점과 담보위반이 치유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면책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해서는 구제법만을 다루고 있다. 피보험자가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a)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b) 보험자는 해당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고, (c) 보험자는 통지를 통해 사기적인 행위시점부터 유효하도록 보험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적용예외 규정은 비소비자보험계약의 경우 투명성 요건을 충족시키면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시킬 수 있다.

이렇게 2015년 영국보험법이 신설됨에 따라 우선 불가피한 부분은 새로운 법안에 대한 단기적인 혼란 및 불확실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피보험자의 합리적인 조사 및 위험을 정의하는 조건 등 새로운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의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물론 여러 번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영국보험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에서도 대다수의 의견은 이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

며 일시적인 불확실성은 감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2015년 영국보험법은 보험자가 시기적절하게 조사를 하거나 보험금 지급지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들은 다루고 있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 영국의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다.⁵⁹⁾ 더군다나 법률위원회에서도 피보험이익 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2015년 영국보험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보험법 분야의 입법적 과정에서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영국해상보험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와 해운업계를 위해서도 이러한 개정동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향후 전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겠다.

59) 특별 공공법안위원회 보고서에서 그러한 조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Newby경에 의해 논의되었다(House of Lords, Special Public Bill Committee's Report on the Insurance Bill [HL], 24 December 2014, 123~125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415/ldselect/ldinsur/81/81.pdf>> 참조).

참 고 문 헌

- 김진권·전해동, “해상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해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 2006.
- 김찬영, “해상보험에 있어 담보특약 법리의 변화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5.
- 박세민,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영국, 독일 및 유럽보험계약법 준칙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47권, 안암법학회, 2015.
- 신건훈, “영국 보험계약법 상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주요 개혁동향”,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 _____, “영국 보험계약법 상 담보법원칙의 개혁동향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 _____, “영국 보험법의 개혁동향에 관한 연구-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6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 이윤석, “보험계약상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 한양법학 제21권 제4집, 한양법학회, 2010.
- 이원정, “영국법상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5.
- 이정원, “2015년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 효과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제150호, 한국법학원, 2015.
- 정완용, “해상보험법상 보험자 면책사유와 담보특약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5.
-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ALRC”), Report No. 91, Review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9.
- Davey, J, “English Marine Insurance and General Average Law”, *International Maritime and Commercial Law Yearbook*, 2015.
- Diamond, A., ‘The Law of Marine Insurance - has it a future?’ *LMCLQ*, 1986.
- Eggers, P.M.,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judicial attitudes and innovation - time for reform?’, in Chapter 10 of D.R. Thomas (ed), *Marine Insurance: The Law in Transition*, London: Informa, 2006.
- Hasson, R.A., “The Basis of the Contract Clause in Insurance Law”, *The Modern Law*

- Review* Vol. 34 No. 1, 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1971.
-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11th edn, London : Sweet & Maxwell, 2008.
- Merkin, R. and Gurses, O., “The Insurance Act 2015: Rebalancing the Interests of Insurer and Assured”, *MLR* 78(6), 2015.
- Rose, F.D., “Restating insurance contract law: centennial reflections on landmark reform”, *LMCLQ*, 2006.
-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Law Com No 353/Scot Law Com No 238, 2014.
-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the Business Insured’s Duty of Disclosure and the Law of Warranties, (LCCP No.204; ScLCDP No.155; 2012).

ABSTRACT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for Reforming the MIA 1906 and Comments on them - Focusing on the Insurance Act 2015 -

Hae-Dong JEON · Gun-Hoon SH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1906) has been a successful piece of legislation, having rarely been amended and having established, or served as an influ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basis of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in several countries. However, it has been recognised that some parts of the MIA 1906 have begun to show their antiquated nature, especially where established principles which were once thought to reflect undoubted propositions of law are now being openly criticised.

Since 2006, the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the 'Law Commissions') have been engaged in a major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law, finally leading to the Insurance Act 2015. The Insurance Act 2015 received Royal Assent on 12 February 2015, and was based primarily on the joint recommendations of the Law Commissions. The 2015 Act made substantial changes to several main areas of marine insurance law & practice: (i) the replacement of the pre-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with a duty to make a "fair presentation of the risk"; (ii) the abolition of the "insurance warranty" under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s.33, and provision of a new default remedy of suspension of liability until the breach is cured; (iii) partial codification of the fraudulent claims rule in insurance contract law, etc.

The Act did not provide for any new statutory duty for insurers to investigate or pay claims in a timely fashion, although this may be revisited in the next Parliament. Moreover, the Law Commissions have reopened their consideration of the doctrine of insurable interest. The 2015 Act may not then signal the end of the legislative programme in this area.

Keywords : Insurance Act 2015, Fair Presentation, Warranties, Fraudulent Claims